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종료 안내(25.12.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강보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단은 지난 2024년 3월 5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적용을 위하여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심각단계)가 해제(2025.10.20.)됨에 따라,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을 아래와 같이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25.12.1.부터 요양비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급여(처방)기간 연장 및 급여제품 구입(대여)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6(2025.10.23.)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

- ◆ 요양비 급여 특례 기간(24.3.5.~'25.10.20.) 해제('25.12.1.) 및 해제 유예기간 ('25.10.21.~11.30.) 운영
- ◆ 공단에서 직권 등록한 처방전(직전 처방전)의 처방종료 기간 도래 또는 도과한 후(後)부터는 요양비 지급청구 시 '요양비 처방전' 반드시 첨부
- ◆ 요양비 처방전 첨부 적용시점은 환자들의 사전 병원 예약 등을 고려하여, '25.12.1. 이후 처방기간 종료 등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

### <공통사항>

- (당뇨 등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적용. 다만, 급여종료일 전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종료일 전 30일 이내 구입한 경우 이전 급여종료일의 다음날로 적용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적용. 다만, 급여종료일 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종료일 전 14일 이내 구입한 경우 이전 급여종료일의 다음날로 등록
- (산소, 인공, 기침) 처방기간 종료일 전 90일 이내 또는 종료일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적용
- (양압기) 처방기간 종료일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적용
  - 순응기간 중 처방종료일 전에 순응하여 순응기간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인정
- ※ 급여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이전 처방기간 종료 전에 신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처방전 발행일을 처방시작일로 인정

### <예시>

- ❶ 처방종료일이 유예기간 이내(~'25. 11. 29)일 경우  
: 처방시작일이 유예기간 내(~'25. 11. 30)로 발행된 처방전까지 특례 인정 가능
- ❷ 처방종료일이 '25.11.30.인 경우  
: 한시적 특례 적용 불가, 요양비 처방전 첨부 필수
- ❸ 처방종료일이 '25.12.1.인 경우  
: 요양비 처방전 첨부 필수
- ❹ 한시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5.11.2.~ '26.11.1.인 경우  
: 처방종료일('26.11.1.)까지 인정
- ❺ 산소치료 처방종료일이 '25.12.10.인 경우  
: '26.1.9.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26.1.9. 이내 대여한 경우 (30일 이내이므로)  
시작일을 '25.12.11.로 등록 가능
- ❻ 양압기 처방종료일이 '25.12.15.인 경우  
: '26.1.15.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30일 이후이므로) 처방시작일로 등록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환자는 공단으로부터 처방전 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요양비 관련 제품을 구입(대여)할 수 있는 요양비 전자처방전을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참고: 요양기관 정보마당>공지사항>「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종료 안내

위와 관련 내용은 요양비 급여대상자(또는 그 가족)에게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단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